

제주지방검찰청

주 소 : 제주시 이도2동 950-1
전화번호 : (064)729-4123

6 9 0 - 7 5 1

2006/07/03

110-240

제주법원우체국

요금후납

26933-01033212 제주법원
특별송달

7.6 수 28

받는 사람

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
빌딩 신관 3층

참여연대

110-240

제주지방검찰청 / 전화 729-4123 / 전송 729-4555			
수신자 제 목	참여연대 고소·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	발신자 검사 정유미 (인)	2006. 6. 30
귀하가 고소(고발)한 당첨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		2006년형제 329호	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
피의자명 죄명	한준 사기 등	주민등록번호	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, 공소권없음	처분일자	2006.06.29
피의자명 죄명	주식회사하스토스템 사기 등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처분결과	기소유예	처분일자	2006.06.29
피의자명 죄명	감성수 사기 등	주민등록번호	
처분결과	혐의없음 (증거불충분), 구약식	처분일자	2006.06.29
피의자명 죄명	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 사기 등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처분결과	구약식	처분일자	2006.06.29
안 내			
1.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가.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(검찰청법 제10조)를 하거나 나. 10일 이내에 재정신청(형사소송법 제260조,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)을 할 수 있으므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더러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2.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중지처분된 경우 가.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나.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3.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729-412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			